



2020년 대법원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 및 평가

2021. 4.

법원행정처

I. 대법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해온 사업내용 및 평가

1. 전국 법원(지원 포함) 양성평등지원관 선정

■ 개요

-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피해자 보호 및 제반 조치를 위하여 각급 법원(지원 포함)에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(각 법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법원에서 선출하거나 지정)

■ 지정 현황

- 법관: 2020. 5. 기준 전국 법원(지원)에 147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함
- 직원: 2020. 7. 기준 전국 법원(지원)에 249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함

■ 각급 법원(지원) 양성평등지원관의 역할

-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: 전체적인 처리절차를 숙지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 및 처리절차·피해회복지원 등 사항 안내
-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비공식적 처리절차의 주재 및 필요 시 공식적 처리절차와 연계

2. 온라인 신고센터,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

■ 개요



- 양성평등지원관을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센터(전국 단위), 사이버 신고센터(각 법원 단위)를 운영
- 2020년에도 온라인 신고센터와 사이버 신고센터의 처리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,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 신고센터, 사이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

3.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(2020. 8.)

▣ 개요

-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 등 사건 심의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(「법원행정처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」)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(2020. 8.)

▣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요

- 당연직 위원장: 윤리감사관
- 위원 6명: 법관, 직원, 외부전문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,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
- 2020년 위원회 구성 시에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직원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함

▣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역할

-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 등 사건을 처리함
-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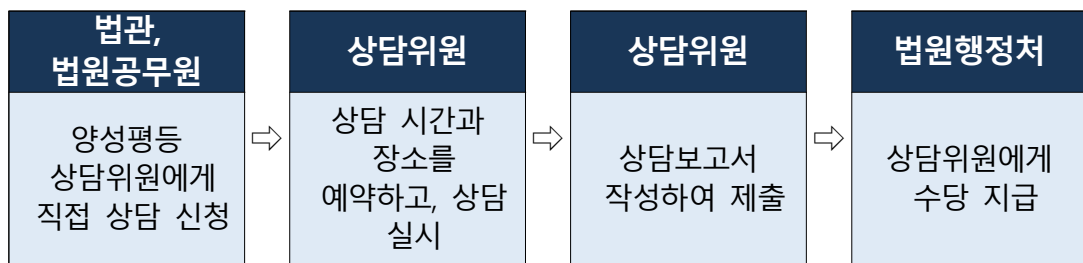


4.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활성화

■ 개요

-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로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법원 직원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의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2020년에 상담위원의 재위촉 또는 신규 상담위원을 위촉(신규 상담위원 3명 및 재위촉 상담위원 22명 위촉)하고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

■ 구체적인 상담절차



■ 상담 현황

- 2020년~2021년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양성평등 상담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⇨ 배정된 예산을 전액 활용하고 있는 상황(향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)

5. 「법원행정처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」 개정(2020. 6. 12.)

■ 개정이유

- 2020년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경유하도록 규정을 개정함
-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처리절차를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, 실질



적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및 성차별 행위 사건을 예방하고자 함

■ **주요내용**

-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은 반드시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함(제11조제2항)¹⁾
- 성차별행위 사건을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처리절차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(제11조제4항)²⁾

6. 2020년 양성평등지원관(법관) 워크숍 개최(2020. 6. 26.)

■ **일시·장소** ⇨ 2020. 6. 26.(금), 사법연수원

■ **참석자** ⇨ 전국 양성평등지원관(법관) 56명

- 2020. 6. 기준 양성평등지원관(법관) 147명, 양성평등지원관(직원) 250명으로 총 397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이 지정됨

■ **워크숍 프로그램 일정표**

월일	시 간	내 용	비 고
6. 26. (금)	09:30-09:50	등록·친교	
	09:50-10:00	워크숍 일정 안내	유제민 사법정책심의관
	10:00-11:40	양성평등지원관(법관) 제도 안내	김윤선 부장판사 ³⁾
	12:00-13:30	점심	
	13:40-15:00	법원 내 성차별·성희롱 사례 및 해결방안(역할극 포함)	문선주 부장판사
	15:00-15:20	휴식	
	15:20-17:00	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접근법	이선이 전문의

1) 제11조제2항: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4항, 제10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.

2) 제11조제4항: 법원행정처장은 성차별행위와 관련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

7. 성평등 제고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실행 TF⁴⁾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

가. 2020. 2. 「법원공무원규칙」 및 「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」 개정

-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, 자녀돌봄휴가 안내 및 팝업 안내창의 자녀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함(규칙 제85조제14항)
-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함(규칙 제85조제15항 신설)
- 임신 초기 유산휴가·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·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(규칙 제85조제10항 개정 및 제11항 신설)

나. 법원어린이집⁵⁾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

- 2020. 2. 초 전국 법원 19개 어린이집 정보제공을 위한 게시판을 개설하였고, 공문을 통해 각급 법원에 게시판 개설 사실을 안내함

다.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

▣ 개요

- 육아기 법관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법관, 본

3) 젠더법연구회 양성평등소모임 팀장 활동 경력

4) 젠더법 연구회 양성평등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TF의 정책 제안 및 젠더법 연구회의 참여: 이연경 판사(수원지방법원), 윤재필 판사(서울가정법원), 한현희 판사(서울행정법원) 등이 각 회의에 참여

5) 2016년 기준 931명에서 2020년 기준 1,327명 유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함



인이 임신한 법관 포함) 중 희망자에게 일과시간 이후 야근, 주말근무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용 가상PC를 단계적으로 배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함

■ 배정 현황

- 2020. 7. 28. 코트넷 공지(법원행정처 차장 명의)를 통한 신청 접수
- 신청기간: 2020. 7. 28. ~ 2020. 8. 12.(16일)
- 총 247명 배정
- 사용기간: 2020. 8. 31. ~ 2021. 3. 21.

II. 관련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

1.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개선 조치 현황 (2018~2020)

가. 성인지 예산 정의

- 국가재원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

나. 국가정책상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

- 기획재정부 '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

[작성 대상 사업]

-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
 - (직접목적 사업)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
 - (간접목적 사업)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

- 국가재정법⁶⁾ 및 양성평등법⁷⁾상의 성인지예산의 편성은 의무사항은 아닌

6) 제16조(예산의 원칙) 5.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

것으로 해석됨(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유권해석)

다. 대법원 성인지 예산 편성경과 및 현황

- 2013년도부터 국선번호료 지원,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지정되어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나,
- 2018년도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이, 2019년도에 국선번호료지원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서 각 제외됨으로써, 현재 대법원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없음

연 도	사 업 명	금액(백만원)	비 고
2013년	국선번호료 지원, 가족등록업무전산화	51,103	-
2014년	국선번호료 지원, 가족등록업무전산화	53,642	-
2015년	국선번호료 지원, 가족등록업무전산화	50,080	-
2016년	국선번호료 지원, 가족등록업무전산화	74,615	-
2017년	국선번호료 지원, 가족등록업무전산화	75,357	-
2018년	국선번호료 지원	59,524	·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제외
2019년	-	-	· 국선번호료 지원 제외

■ 제외 사유

- 가족등록업무전산화 및 국선번호료 지원사업은 ‘성 편향성 극복’이라는 성인지 제도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, **성별과 무관하게 ‘국민 일반’**을 위한 제도임
- [참고] 대외 기관의 지적 (박주민 의원) : 일요신문 2016. 9. 25.자
 - “최근 3년간 여성인권 향상과는 거리가 먼 성 편향성 극복을 위한 성인지 사업에 엉뚱한 사업인 국선번호료 지원 사업을 끼어넣어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했다”는 지적

7) 제16조(성인지 예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(성인지)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,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


-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은 호주제가 이미 2005년에 폐지되었고,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성평등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

라. 현행 대법원의 여성인권 향상 및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

▣ 직장보육시설 운영

-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사법행정효율성증진(세부사업)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(내역사업)으로 편성되었으나 법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

▣ 젠더법 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 활동

- 젠더법 연구회 등 각종 양성평등 관련 연구회 활동의 경우 전문재판운영(세부사업)의 전문분야실무연구회 지원(내역사업) 중 하나로 지원되므로 미대상

▣ 양성평등 교육

- 양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(세부사업) 중 하나의 사업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, 양성평등 교육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고유의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

▣ 여성화장실 개선

-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은 청사화장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, 법원시설관리(세부사업)의 민원환경 개선(내역사업) 중 하나로 편성되어 미대상

마. 향후 계획

- ▣ '19년 이후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이 없는 것은 상기 대법원의 여성인권 관련 예산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렵거나, 예산안 편성 지침 상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



- 한편 대법원의 예산은 대부분 재판 등 사법업무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로서 성구별적 요소가 없는 예산이며, 대법원에서 수행하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또한 남녀노소 여부와 관련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고있는 서비스임
- 다만 대법원은 향후에도 예산 편성시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재정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함

2. 육아휴직 참여 성별 비율 (2018~2020)

구분	연도	인원 ⁸⁾			여성비율
		전체	남성	여성	
육아휴직 참여 성별 비율	2018	1069	187	882	82.5%
	2019	1226	280	946	77.2%
	2020	1107	258	849	76.7%
합계		3402	725	2677	78.7%

8) 법관, 법원공무원 모두 포함된 수치임